

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84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06.1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반영
-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영
-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과 용어, 문구등 미비점에 대해 조문 형식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

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구성, 심의사항 등 각 조의 내용 정리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)
- 나. 조문, 조항, 각호 신설로 위원회 운영 신뢰성 확보
 - 위원의 위촉 해제(안 제2조의2)
 -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 지가산정(안 제4조제6호)
 - 위원회 개최 전 의안송부(안 제5조제2항)
 - 경미한 사안 서면심의(안 제5조제3항)
- 다. 용어변경 및 문구정리
 - 부동산중개업자 ⇨ 개업공인중개사 (안 제2조제3항)
 - 간사 등 : 관련업무담당주사 ⇨ 관련업무담당계장, 관련업무담당자(안 제7조)
 -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⇨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(안 제8조)

개정조례안 : 불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6. 3. 8. ~ 2016. 3. 28. (21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붙임4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5

< 붙임 1 >

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동산중개업자”를 “개업공인중개사”로 한다.

- ①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,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촉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(非違) 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5.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여 같은 조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원회의 심의사항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,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29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
6.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종료시점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6조 중 “재직의원”을 “재적위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1인”을 각각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서무”를 “사무”로 한다.

-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,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.

제8조 중 “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”를 “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표준주택가격이”를 “표준주택가격에 대해”로, “3~7인 이내”를 “3명 이상 7명 이하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공무원”을 “안산시 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·과		토지정보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토지정보과장 박 병 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공시지가계장 고 재 준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고 재 준 (행정 2627)

< 붙임 2 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 이라 한다)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<u>부동산평가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<u>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생략</p> <p>③위원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, 한국감정원, 감정평가사, <u>부동산중개업자, 건축사,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</u> 등 부동산거래실무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④ 생략</p>	<p>제2조(구성) ①<u>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</u>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,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 <u>개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회의소집)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5조(회의소집) ①</p> <p>②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</p>
<p>제6조(의사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6조(의사) ----- 재적위원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7조(간사등)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</p> <p>②간사는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.</p> <p>③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</p>	<p>제7조(간사등) ①-----1명 -----</p> <p>1명-----</p> <p>②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,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.</p> <p>③-----</p> <p>----- 사무</p> <p>-----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<u>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</u>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의견청취) ----- ----- <u>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</u> ----- -----</p>
<p>제10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의 심의전 표준지가격 및 <u>표준주택가격이 인근지역</u> 가격과의 균형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<u>3~7인 이내</u>로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② 생략</p>	<p>제10조(소위원회) ①----- -----<u>표준주택가격에 대해</u> ----- ----- -----<u>3명 이상 7명 이하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수당과 여비) <u>공무원이 아닌 위원</u>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「<u>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수당과 여비) <u>안산시 소속 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